

광주지방법원 2022. 12. 7 선고 2022나5365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2. 12. 7 선고 2022나53654 판결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. 2. 10 선고 2020가단70936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호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치영

변론종결 2022. 10. 19.

판결선고 2022. 12. 7.

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. 2. 10. 선고 2020가단70936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주위적으로,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과 피고 사이의 2015. 11. 26.자 1억 7,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,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예비적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○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3행 “광양시 F 임야” => “광양시 F 임야(이하 F 임야라 한다)”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 “한편~”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.

『라. 한편, C은 Q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, 2015. 6. 10. E 명의 F 임야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K 주식회사 명의인 광양시 I 및 J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, 근저당권자 Q, 채권최고액 3억 원, 채무자를 자신의 친구인 R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.

마. E은 2016. 1. 12. I 임야에 관하여 채권자 L조합, 채권최고액 6억 5,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, L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, 그 중 283,632,507원은 G조합에 대한 종전 근저당권부 대출금을 변제하고(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), 나머지

216,081,893원은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.

바. 피고는 2015. 11. 26. M으로부터 광양시 N 임야 3,306㎡(이하 ‘이 사건 임야’라 한다)를 3억 5,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, 계약금 3,500만 원은 같은 날 C으로부터 수령한 돈으로 지급하였고, 나머지 잔금 3억 1,500만 원 중 1억 8,000만 원은 2016. 1. 12. O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차용한 돈으로(채권최고액 2억 1,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), 나머지 1억 3,500만 원은 같은 날 위 마.항과 같이 E으로부터 이체받은 돈으로 지급하였다.

사. 한편,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20. 5. 27. 주식회사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(2020. 5. 26. 매매 원인)가 마쳐졌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, 6, 7, 9, 10, 12, 16, 18호증, 을 제1, 3, 4호증(가지번호 포함하며 이하 같다), 변론 전체의 취지』○ 제1심판결 제4면 제12행 “②~”부터 제5면 제10행 “~보아야 하므로”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.『② E의 F 임야를 담보로 한 G조합에 대한 대출금과 관련하여 2015. 2. ~ 2015. 12.경까지 C, H, K이 E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으로 대출원리금이 변제되었고, 위 임야를 담보로 한 E의 L조합에 대한 대출금 역시 2016. 2. ~ 2017. 8.까지 대부분 C, H, 피고가 E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으로 대출원리금이 변제되는 등 E이 위 각 대출금의 변제에 기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(피고는 위 각 대출원리금의 변제금은 자신 및 E이 H의 식당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, 당시 E 및 피고의 나이, 근무가능기간, 급여의 액수 및 지급방법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,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), ③ C이 자신의 사업자금 융통을 위하여 Q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자 E 명의의 F 임야를 Q에게 담보로 제공한 점, ④ 위와 관련하여 C이 Q, R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, C은 2019. 4. 16.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“2013. 12.경부터 광양시 J 일원 13필지를 K 명의로와 E, 피고 명의로 매입하기 시작하였다”는 내용이 포함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, 위 사건(이 법원 2020고단2542호)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도 “당시에 증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다음에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려고 하였나요?”라는 질문에 대하여 “당연하죠. 예, 맞습니다”라고 답변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, F 임야의 실제 소유자 또는 처분권자는 C이라고

할 것이고, 피고는 C으로부터 C이 실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이 있는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을 제공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』○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 “2015. 11. 26. 증여계약” => “2015. 11. 26.자 증여계약(1억 7,000만 원 중 1억 3,500만 원은 2016. 1. 12. E 명의 계좌에서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증여계약에 따른 이행에 불과하고, 증여계약일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일로 볼 것이다)”로 고친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용신, 판사 정영하, 판사 황진희